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입주관리 요령

개정기록표

개정번호	개정일	근 거	주요개정내용
Rev. 0	'16.09.0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자유무역지역 입주관리 요령 제정
Rev. 1	'18.11.14.	상 등	입주(변경)계약 및 입주변경신고 추가
			공항물류단지 차량 정류등록 기준강화, 단기등록 기준 확대 등 등록체계 변경
			옥외광고물 승인 및 안전점검 과정 추가
Rev. 2	'19.12.20	상 등	입주(변경)계약 체결대상 구체화 및 절차 현행화
			자유무역지역 인원 및 자동차 출입관리체계 구체화 및 현행화
			옥외광고물 승인내용 및 안전점검 관리방식 구체화
			안전관리 규정 신설

용어의 정의

이 입주관리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라 함은 해당 정보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한다.
2. “공항공사 협력업체”라 함은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각종 공항시설을 관리운영 하고 있는 업체(하도급업체 포함)를 의미한다.
3. “비업무차량”이라 함은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와 관련된 업무 목적이 아닌 단순 주차, 통과 등을 위해 출입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상주직원”이라 함은 인천국제공항 내 시설에 입주한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직원을 말한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따라 일정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해 전송하는 장치로,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 등을 말한다.
6.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이라 함은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일원으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하며, 화물터미널지역과 공항물류단지로 구분된다.
7. “입주자시설 주변 개별관리구역”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 가. 화물터미널 : 터미널 전면부터 화물차 주차구역 까지
 - 나. 운송대리점 : 운송대리점 전면 후면 주차구역 등 건물 주변
8. 전기술설비기준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의해 제정 및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9. “조업”이라 함은 화물의 반입, 분류, 보관, 포장, 통관, 운송, 적재 등 화물처리를 위한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10. “청문”이라 함은 행정절차법에 의해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 당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하며, 시행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11. “옥외광고물”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설치하는 것으로,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채널형 옥외광고물(Channel Signage)라 함은 바탕면 없이 문자만을 입체적으로 표현한 형태의 간판을 말한다.
12. “카고로드(Cargo Road)”라 함은 화물터미널 전면부의 화물작업차량의 통행을 위해 설계된 도로를 말한다.

목 차

장	절	목 차 명	페이지
자유무역지역 입주관리 요령 개정기록표			1
용어의 정의			2
목 차			3
제1장	일반사항		6
	1.1	목적	
	1.2	적용범위	
	1.3	시행시기	
	1.4	관련법령 및 적용규정	
제2장	입주계약		7
	2.1	일반사항	
	2.2	계약의 조건	
	2.3	계약의 절차	
	2.4	계약의 기간	
	2.5	제출서류	
	2.6	입주계약 서류의 접수	
	2.7	계약의 체결	
	2.8	계약의 변경	
	2.9	입주(변경)계약 이행사항 점검	
	2.10	계약의 해지	
	2.11	계약의 만료	
제3장	임(전)대 신고		14
	3.1	임(전)대 신고의 대상	
	3.2	제출서류	
제4장	출입관리		15
	4.1	출입관리	
	4.2	공항물류단지 자동차 출입관리	
	4.3	화물터미널지역 자동차 출입관리	
	4.4	자동차 등록의 거부·취소 및 변경정보의 통보	
	4.5	인원출입관리	
	4.6	출입기록 및 등록정보 관리	
	4.7	출입기록의 제공	
제5장	폐기물관리		17
	5.1	폐기물관리	
	5.2	폐기물 처리 주체 및 구역	
	5.3	폐기물 무단 투기 또는 관리 부실에 따른 제재 조치	
	5.4	공용지역 내 폐기물 처리	
제6장	교통관리		18
	6.1	교통질서 준수	
	6.2	교통질서 위반 단속	
제7장	조업구역 지정 및 운영		20
	7.1	조업구역의 지정 및 구분	
	7.2	조업구역 내에서의 작업	
	7.3	조업구역의 이용	

장	절	목 차 명	페이지
	7.4	조업구역 관리	
	7.5	조업구역 사용료	
	7.6	불법조업 단속	
제8장	입주실태 관리		22
	8.1	입주실태 점검	
	8.2	현장점검 등을 위한 사전통보	
제9장	공용시설물 이용		23
	9.1	공용시설물 이용	
	9.2	체육공원	
	9.3	공용회의실	
	9.4	공항물류단지 공용주차장	
	9.5	공용시설물 이용자의 책임	
제10장	자유무역지역 운영위원회		25
	10.1	자유무역지역 운영위원회의 운영	
	10.2	운영위원회 구성	
	10.3	운영위원회 개최	
	10.4	운영위원회 기능	
	10.5	안건의 제출	
제11장	옥외광고물 표시승인 및 관리		27
	11.1	옥외광고물의 표시	
	11.2	승인사항	
	11.3	내용에 관한 사항	
	11.4	수량 및 설치위치에 관한 사항	
	11.5	재질 및 색상에 관한 사항	
	11.6	크기 및 규격에 관한 사항	
	11.7	전기 및 조명에 관한 사항	
	11.8	현수막 부착에 관한 사항	
	11.9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제12장	개인정보의 관리		31
	12.1	개인정보의 수집	
	12.2	개인정보의 취급	
	12.3	개인정보의 이용	
	12.4	개인정보의 파기	
	12.5	기타	
제13장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27
	13.1	공항공사의 역할	
	13.2	입주자 책임사항	
제14장	안전사항		33
	14.1	일반사항	
	14.2	안전관리	
	14.3	안전점검	
	14.4	안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장	절	목 차 명	페이지
별 지			34
	제1호	자유무역지역 입주(변경)계약 신청(확인)서	
	제2호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입주(변경)계약 세부내역	
	제3호	사업계획서	
	제3호	[붙임] 임(전)대내역서	
	제4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동의서	
	제5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6호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 변경사항 신고(확인)서	
	제7호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만료 신고(확인)서	
	제8호	임(전)대차계약 사전신고(확인)서	
	제9호	임(전)대차계약 체결신고(확인)서	
	제10호	공항물류단지 차량출입등록 신청서	
	제11호	공항물류단지 차량출입등록 신청서(단체용)	
	제12호	공항물류단지 차량출입등록 말소 신청서	
	제13호	폐기물 처리 안내문	
	제14호	공항물류단지 노상주차공간 지정요청서	
	제15호	체육공원 시설 이용신청서	
	제16호	체육공원 이용자 명단	
	제17호	체육공원 이용수칙 협약서	
	제18호	공용회의실 사용신청서	
	제19호	자유무역지역 운영위원회 안전제출 서식	
	제20호	옥외광고물등 표시 승인(요청)서	
	제21호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	

제1장 일반사항

1.1 목적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이하 “자유무역지역”이라 한다) 입주관리 요령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 등)에 의거하여 자유무역지역 입주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유무역지역의 입주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입주관리 요령을 따른다.

1.2 적용범위

이 입주관리 요령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라 한다), 자유무역지역의 운영과 관련된 공항공사 협력업체,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업체 및 개인(이하 “입주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3 시행시기

입주관리 요령은 2016년 9월 5일부터 공항공사가 운영·관리하는 자유무역지역에 적용된다. 입주관리 요령의 개정시, 개정사항은 개정기록표상 기록된 개정일로부터 적용된다.

1.4 관련법령 및 적용규정

자유무역지역의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관련법규 및 공항공사 관련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적용한다.

1.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공항시설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2.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4.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5. 공항공사 관련규정
 - 가. 폐기물관리지침서
 - 나. 주차장관리운영규칙
 - 다. 개인정보관리지침

제2장 입주계약

2.1 일반사항

2.1.1 입주계약

입주계약은 자유무역지역 입주에 대하여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입주를 승인하는 절차이다.

2.1.2 입주계약의 근거

공항공사는 입주계약과 관련하여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제40조제6항 제1호~제4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자로서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려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입주자격 및 입주가능업종의 영위 여부를 확인하고, 결정사유를 조회한다.

2.1.3 입주계약의 대상

1.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공항공사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자유무역지역법 제12조에 따른 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자유무역지역법 개정 시행(2016년 7월 26일) 이전에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입주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영위 중인 입주자는 공항공사와 별도의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주허가를 득한 내용에서 최초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항공사와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2 계약의 조건

2.2.1 입주자격

1.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갖추고, 관련 업종을 영위하여야 한다.
2. 입주자격 및 관련 업종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제7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8조에 근거한다.
3. 기타 세부사항은 항공사업법, 산업발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다.

2.2.2 입주가능업종

1.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2.2.1의 입주자격을 갖추고,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관련 업종을 영위하여야 한다.
2.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입주가능업종임을 확인하는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이며, 해당 업종이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실제로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실제로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증빙하기 위하여는 해당 업종이 사업자등록증 상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업종을 근거로 입주한 경우 공항공사가 입주계약 확인서를 발급한 날(이하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가능업종이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2.2.3 결격사유

-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체(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자유무역지역법 제12조 제3항~제8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개인사업자의 대표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원(해당 법인의 자유무역지역 내 사업장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로 한정하며,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임원이어야 한다. 이하 “직접담당임원”)은 자유무역지역법 제12조 제1항~제6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여야 한다.

2.3 계약의 절차

2.3.1 신규 입주자

-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신규로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공항공사와 입주계약을 체결한 이후 자유무역지역 내 시설의 건물주 또는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또는 전대차계약(이하 “임(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예외적으로 자유무역지역 내 시설의 건물주 또는 임대인과 임(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가능업종이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2.3.1.2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항공사가 입주계약 체결 전 임(전)대차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구두, 유선, 전자우편 등의 수단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공항공사의 확인 없이 임(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공항공사는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2.3.2 공항공사와 계약관계가 있는 입주자

- 공항공사와 계약관계가 있는 입주자는 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사업 시행에 관한 실시협약(이하 “실시협약”)을 체결한 자, 상업시설 사업자선정을 통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및 사무실 또는 창고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 공항공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공항공사로부터 토지를 임차하는 자는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공항공사의 상업시설 사업자선정을 통하여 공항공사로부터 건물을 임차하는 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공항공사와 사무실 또는 창고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하는 자는 입주계약 체결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항공사가 임대차계약의 우선 체결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 체결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4 계약의 기간

- 2.4.1 입주계약의 시작일은 공항공사가 2.6.2와 같이 입주계약의 서류를 접수한 날(이하 “접수일”)로 한다.
- 2.4.2 입주계약의 만료일은 임(전)대차계약 사전신고(확인)서(별지 제8호)의 계약기간 만료일과 동일하다. 만약 복수의 임(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만료일이 가장 늦은 임(전)대차계약의 만료일로 한다.
- 2.4.3 다만,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를 임차한 입주자의 입주계약 기간은 예외적으로 산정한다.
 - 토지를 임차한 입주자와의 계약기간은 입주자가 공항공사와 체결한 실시협약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다.
 - 국토교통부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공항공사와 토지 사용에 관한 계약(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의 계약 시작일은 입주자가 국토교통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의 체결일과 동일하다. 계약 만료일은 실시협약 또는 토지 사용에 관한 계약의 규정을 준용한다.

2.5 제출서류

2.5.1. 서류의 제출

-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자유무역지역법 제12조에 따라 각종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항공사가 자체적으로 조회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 기본제출서류 및 추가증빙서류의 유효기간은 해당 서류의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2.5.2 작성서류

- 자유무역지역 입주(변경)계약 신청(확인)서 (별지 제1호)
-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입주(변경)계약 세부내역 (별지 제2호)
-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 제4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별지 제5호)
- 임(전)대차계약 사전신고(확인)서 (별지 제8호)

2.5.3 기본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소유자)

2.5.4 추가증빙서류(필요시)

1. 수출입실적확인 증명서류 (수출입을 주목적으로 제조업, 도매업,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등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2. 재무제표 또는 매출실적자료 (수출입 실적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4. 인가, 허가, 면허, 등록 증명서류
5. 자국 신원증빙서류 (외국인인 경우)
6.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소유자이나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7. 건축물대장 (시설운영자의 경우)

2.6 입주계약 서류의 접수

- 2.6.1 공항공사는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후 서류의 보완작성 또는 증빙자료의 추가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항공사로부터 서류의 보완작성 또는 증빙자료의 추가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요청일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모든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보완서류의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2.6.2 공항공사는 제출한 서류 및 증빙서류의 내용을 확인 완료한 후 유선 또는 전자우편 등의 수단으로 입주계약 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통지한다. 또한, 공항공사로부터 입주계약 서류 접수를 통지받은 자는 통지일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별지 제1호 및 제2호에 직인을 날인한 원본서류 각 2부를 공항공사에 등기 등의 방식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2.6.3 공항공사가 서류를 접수한 이후 추가 보완작성 또는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5근무일 이내에 모든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기한 내에 모든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 서류의 접수를 취소한다. 다만,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보완 서류의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7 계약의 체결

- 2.7.1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사무실, 창고 등 시설물의 사용시작일로부터 10근무일 이전에 공항공사에 입주계약의 서류 접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 2.7.2 공항공사는 입주계약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며, 입주계약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계약체결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2.7.3 계약체결 과정에서 확인한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지방세, 국세 또는 관세가 체납된 경우 공항공사가 입주계약 신청자에게 체납 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입주계약의 신청자가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의 서류 접수를 취소한다.
 2. 이외의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결격사유 확인 즉시 입주계약의 서류 접수를 취소한다.

2.7.4 공항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입주계약을 체결한다.

1. 공항공사는 입주계약을 신청한 자의 입주자격, 입주가능업종의 영위, 사업계획 및 결격사유 여부 등을 검토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한다.
2. 자유무역지역 내 건물에 임(전)차하여 입주하려는 자는 건물주 또는 임대인이 공항공사로부터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부합하는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3. 입주계약의 체결 이후 제출서류에 대한 허위사실 확인 또는 결격사유 확인 시 공항공사는 해당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7.5 공항공사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공항공사와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항공사로부터 전대차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8 계약의 변경

2.8.1 변경계약 체결

자유무역지역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업종, 사업장 위치 및 면적을 변경하려는 자는 사무실, 창고 등 시설물의 사용시작일로부터 10근무일 이전에 공항공사와의 별지 제1호의 입주변경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사업장 위치 및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공항공사와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한 이후 임대차계약 또는 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변경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1. 자유무역지역법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업종변경시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가능한 업종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3. 시설물의 사용시작일로부터 10근무일 이전에 변경계약체결 신청을 아니하는 경우
4. 계약변경의 목적이 공항공사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한 사업자가 승인받은 사업 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2.8.2 변경내용 신고

자유무역지역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업종, 사업장 위치 및 면적 변경 이외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 변경사항 신고(확인)서(별지 제6호) 및 변경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변경내용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표이사 및 직접담당임원 변경시 결격사유조회 결과에 문제가 있는 경우
2.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변경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2.8.3 기타

1. 계약의 만료일을 변경하는 경우 입주자가 연장하여 체결한 실시협약, 임(전)대차계약의 기간과 동일하게 만료일을 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의 시작일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최초로 득한 입주허가 또는 입주계약의 시작일로 한다.

- 2. 변경계약 체결의 사유와 변경내용 신고 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공항공사와 변경 계약을 체결한다.
- 3. 변경계약 체결에 관한 세부사항은 2.2~2.7의 사항을 준용한다.

2.9 입주(변경)계약 이행사항 점검

- 2.9.1 공항공사는 입주(변경)계약 체결 과정에서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장 또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 2.9.2 공항공사는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자로서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입주(변경)계약 체결시 승인을 득한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이행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사업장을 방문할 수 있다. 이 때, 공항공사는 사업장 방문과 관련하여 5근무일 이전에 방문 일정 및 목적, 방문자 명단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박하게 점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10 계약의 해지

2.10.1 해지사유

공항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주자에 대해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자유무역지역법 제15조에 의한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 2. 실시협약, 임대차계약 및 전대계약이 해지 된 경우
- 3. 기타 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사유가 발생할 경우

2.10.2 해지에 대한 청문 절차

자유무역지역법 제15조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공항공사는 자유무역지역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청문을 시행한다.

2.10.3 해지 시 후속 절차

2.7.1에 의해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자유무역지역법 제15조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입주계약서를 공항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11 계약의 만료

- 2.11.1 입주계약 기간이 만료된 업체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만료 신고(확인)서(별지 제7호) 및 입주계약서를 공항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2.11.2 입주계약 기간 중에 자유무역지역에서 퇴고하고자 하는 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만료 신고(확인)서(별지 제7호) 및 입주계약서를 공항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임(전)대 신고

3.1 임(전)대 신고의 대상

공항공사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는 자는 시설을 임(전)차하여 입주하려는 사업자와 임대차계약 또는 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공항공사에 임(전)대차계약체결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때, 임(전)대차 계약은 공항공사와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와 체결할 수 있다. 공항공사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항공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자
- 2. 공항공사와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3.2 제출서류

임(전)대차 계약체결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 1. 임(전)대차계약체결 신고(확인)서 (별지 제9호)
- 2. 임(전)대차계약서
- 3. 임(전)대차계약체결 현황

제4장 출입관리

4.1 출입관리

- 4.1.1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으로 자유무역지역 출입증·통행증 발급 의무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출입관리절차서”는 폐지되며, 자유무역지역 출입관리에 대한 모든 사항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 4.1.2 공항공사는 자유무역지역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하는 사람 및 자동차(건설기계 포함, 이하 “자동차”라 한다)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기록을 관리한다.
- 4.1.3 자유무역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을 확보하고 자동차에 대한 효율적인 출입관리를 위하여 모든 자동차는 공항공사에 출입등록을 하여야 한다.

4.2 공항물류단지 자동차 출입관리

4.2.1 등록의 종류

1. 정기등록

입주업체, 입주업체의 협력사, 상주기관 등 공항물류단지 운영과 직접 관련된 자동차로 등록 승인일로부터 3년간 출입이 가능하며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 6개월 이상 출입하지 않으면 정기등록을 삭제하며, 필요 시 재등록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대 등록을 원칙으로 한다.

2. 단기등록

화물운송, 건설, 유지보수, 생계형 출입(입주기업체·협력사 관계자) 등을 위해 공항물류단지에 지속적으로 출입이 필요한 자동차로 등록일로부터 6개월간 출입이 가능하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대 등록을 원칙으로 한다.

3. 임시등록

정기등록, 단기등록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로 등록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 출입이 가능하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4.2.2 등록 방법

- 1. 정기·단기등록은 입주업체(협력사 포함)에서 문서로 별지 제10, 11호의 서식을 첨부하여 등록희망일 10근무일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임시등록은 FTZ 종합상황실 내 키오스크를 사용하여 출입 당일 등록할 수 있다.
- 2. 정기·단기등록 신청은 방문 (FTZ 종합상황실) 또는 이메일(icnftz@gmail.com)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4.3 화물터미널지역 자동차 출입관리

공항공사는 화물터미널지역 출입 자동차에 대하여 “인천국제공항 주차장관리운영규칙”에 따라 관리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출입기록을 관리한다.

4.4 자동차 등록의 거부·취소 및 변경정보의 통보

- 4.4.1 공항공사는 등록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정보가 허위이거나 등록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등록을 거부 및 취소 할 수 있다.
- 4.4.2 자동차 등록 정보는 변경 발생 즉시 공항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정보변경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공항공사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4.5 인원출입관리

- 4.5.1 자유무역지역 인원출입관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기록하며, 공항공사는 입주업체로부터 상주직원의 소속 및 인원수 등에 대한 정보를 제출받아 관리할 수 있다.
- 4.5.2 입주업체는 입주계약 체결 시 상주직원 수, 성명, 직위 등 자유무역지역 상주직원에 대한 정보를 공항공사에 제출한다.
- 4.5.3 입주업체는 상주직원 정보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반기별로 공항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4.6 출입기록 및 등록정보 관리

- 4.6.1 사람 및 자동차의 출입기록은 3개월이 경과하면 삭제할 수 있다.
- 4.6.2 개인식별정보를 삭제한 기록 및 정보에 대해서 공항공사는 출입등록, 통계 생성 등 자유무역지역의 관리를 목적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다.

4.7 출입기록의 제공

- 4.7.1 자유무역지역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공항공사는 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하는 사람 및 자동차의 출입기록에 대하여 세관장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른다.
- 4.7.2 범죄 등 수사를 목적으로 수사기관이 출입기록을 요청할 경우 공항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람 및 자동차의 등록 및 출입기록을 제공한다.

제5장 폐기물관리

5.1 폐기물관리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배출, 신고, 처리 및 보고 등 모든 관련 업무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인천공항 폐기물관리지침서 등을 따른다.

5.2 폐기물 처리 주체 및 구역

폐기물 처리 주체 및 구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입주자는 다음의 폐기물에 대한 관리 및 처리 책임을 가진다.
 - 가. 입주자시설 내부 또는 입주자시설 주변 개별관리구역에서 발생된 폐기물
 - 나. 입주자시설 이용고객으로 부터 유발되는 폐기물
2. 조업구역의 지정을 요청하여 이용하는 자는 조업구역 내에서 발생·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해 관리책임을 가진다.
3. 그 외 주차장 등 공용지역(이하 “공용지역”이라 한다)에서 발생·배출되는 폐기물은 발생·배출자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3 폐기물 무단 투기 또는 관리 부실에 따른 제재 조치

자유무역지역 내 폐기물 무단 투기 행위에 대해 공항공사는 단속을 시행할 수 있으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업체 또는 개인에 대해 즉각 신고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용지역 내 폐기물 무단 투기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2. 폐기물의 보관·수집·운반 시 폐기물이 유실 및 공용지역으로 분산되는 경우
3. 기타 폐기물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5.4 공용지역 내 폐기물 처리

5.4.1 공용지역 내 무단방치 물품의 처리

공용지역 내 공항공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물품을 방치하는 경우 공항공사는 이를 폐기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5.4.2 공항공사는 공용지역 내 방치 물품에 대하여 물품 소유자의 처리 요청 및 공항공사의 임의처분 계획에 대해 별지 제13호의 폐기물 처리안내문을 발부하고, 발부 후 상당기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물품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임의 처분할 수 있다.

5.4.3 공용지역 내 물품의 처리비용은 폐기물 소유자 또는 배출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6장 교통관리

6.1 교통질서 준수

자유무역지역의 차량, 조업장비, 인원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항공사는 계도인력 배치를 통한 계도, 단속 등 자유무역지역 내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6.1.1 자유무역지역 내 차량 등 제한속도는 다음과 같다.

1. 도로 : 40km/h
2. 주차장지역 : 20km/h

6.1.2 화물터미널지역 대기 및 주차구역

1. 조업대기구역

화물터미널 전면과 카고로드(Cargo road) 사이의 공간은 화물차 조업대기구역으로, 화물차량은 화물 승하차를 위하여 임시 대기를 할 수 있다. 대기차량은 주행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승하차가 완료되는 즉시 조업대기구역에서 출차하여야 한다. 화물차량을 제외한 차량의 조업대기구역내 대기는 주차위반으로 간주한다.

2. 화물차 주차구역

화물터미널 전면부의 화물차 주차공간 지정된 구역은 화물차만 주차 가능하며, 그 외 차량의 주차 및 주차구역내 조업작업은 주차위반으로 간주한다.

3. 단기업무 주차구역

화물터미널 전면 소형차 주차구역은 화물 반출입 오더 처리를 위한 단기업무차량 공간으로 최대 30분까지 주정차가 가능하며, 단기업무 이외 차량의 주차는 주차구역 위반으로 간주한다.

4. 소형차 주차구역

화물터미널지역을 출입하는 차량 중 화물트럭 및 단기업무차량을 제외한 차량은 반드시 소형차 주차구역에 주차하여야 하며, 화물트럭의 주차는 주차위반으로 간주한다.

5. 지게차 주차구역

화물터미널 지역 내 지게차는 화물터미널 전면 화물차 주차공간 옆에 마련된 지게차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여야 한다.

6.1.3 공항물류단지 주차

공항물류단지 내 주차는 지정된 주차구역에 하여야 하며 노상주차를 해서는 안된다. 다만, 공항물류단지 입주자는 공항공사에 노상주차공간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항공사는 교통 혼잡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노상주차공간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1. 노상주차공간 지정은 통행량이 빈번하지 않은 편도 3차선 이상의 도로에 가능하며, 신청양식은 별지 서식 제14호에 따른다.
2. 노상주차공간을 요청하여 사용하는 자는 노상주차공간에 대한 청소 등 관리의 책임이 있다.
3. 공항공사는 정기적인 순찰을 통해 노상주차공간을 사용하는 자가 청소 등 관리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교통 혼잡 및 사고유발 등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노상 주차 공간 사용에 대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6.1.4 화물터미널지역의 모든 교차로에서는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6.1.5 모든 화물차량은 주행 시 윈바디를 열고 주행해서는 아니 되며, 윈바디를 열고 주행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시설물 손실 등에 대해 공항공사는 해당업체 및 차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2 교통질서 위반 단속

공항공사는 자유무역지역 내 속도위반, 주차구역 위반, 역주행, 교차로 일시정지, 화물차 운영 등 교통질서 위반사항에 대해 단속을 시행하며, 위반차량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장 조업구역 지정 및 운영

7.1 조업구역의 지정 및 구분

공항공사는 화물터미널지역 내 무분별한 조업활동으로 인한 사고위험 방지 및 물류흐름 개선을 위해 입주자와 협의를 통하여 화물터미널지역 내에 일시적으로 조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조업구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 된다.

7.1.1 수입화물처리 조업구역

수입화물처리로 인한 화물터미널 전면부의 혼잡 완화를 위하여 화물터미널 운영자는 공항공사에 조업구역 지정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공항공사는 화물차 주차 및 화물 반출입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입화물 처리를 위한 조업구역을 지정을 할 수 있다.

7.1.2 수출화물처리 조업구역

Cut-off Time에 임박하여 도착한 수출화물 처리로 인한 화물터미널 전면 캐노피 지역 혼잡 완화를 위하여 화물터미널 운영자는 공항공사에 조업구역 지정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공항공사는 화물차 주차 및 화물 반출입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출화물 처리를 위한 조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7.1.3 혼재조업구역

주차장구역에서 혼재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창고시설을 갖추지 못한 영세 운송업체들은 공항공사에 혼재조업구역 지정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공항공사는 화물터미널지역 내 주차공간 확보 및 차량 이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혼재조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7.2 조업구역 내에서의 작업

조업구역 내의 작업은 긴급하고 일시적인 다음의 조업만을 허용 한다.

1. 수입화물처리 조업구역 : 수입화물 처리를 위한 화물 적재 및 상차 등 단기작업
2. 수출화물처리 조업구역 : 수출화물 처리를 위한 라벨링, 재포장 및 팔레트작업 등 단기작업
3. 혼재 조업구역 : 환적, 이적과 관련된 단기작업

7.3 조업구역의 이용

조업구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항공사에 문서로 요청하고, 공항공사는 적정성여부 검토 후 조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7.4 조업구역 관리

조업구역을 이용하는 자는 조업구역의 질서유지, 사고예방 및 폐기물 처리 등의 관리 책임이 있다.

1. 수출입 화물처리 조업구역에 대한 폐기물 처리는 화물터미널 운영자의 책임으로 하며, 조업 구역의 청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혼재 조업구역 내에서 작업하는 자는 폐기물 처리 업체와 계약 등 폐기물을 처리방안을 마련 하여야 하며, 조업구역의 청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7.5 조업구역 사용료

7.5.1 수출입 화물처리 조업구역은 한시적으로 무상 운영한다.

7.5.2 혼재 조업구역은 화물터미널 지역 운영환경 개선을 위하여 '16년 한시적으로 무상 운영하며, '17년 이후 공항공사는 공항물류단지 참고 운영에 대한 영향 평가 및 입주자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토지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7.6 불법조업 단속

지정된 조업구역 외 지역에서의 라벨링, 재포장, 팔레트작업, 화물적재, 상하차 작업, 환적 및 이적작업 등의 조업활동은 불법조업으로 간주하며, 공항공사는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장 입주실태 관리

8.1 입주실태 점검

공항공사는 자유무역지역 입주현황 및 입주계약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 입주자에 대한 입주현황, 고용현황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 방문 등의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입주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8.2 현장점검 등을 위한 사전통보

8.1의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공항공사는 현장방문 5일전에 방문목적, 방문자 인적 사항, 방문 수행내용 등 방문계획을 입주자에 유선 또는 문서 등으로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장 공용시설물 이용

9.1 공용시설물 이용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공용시설물 이용에 대한 사항은 다음의 규정을 따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용시설물의 이용은 사용신청 및 승인 순서에 따른다.

9.2 체육공원

9.2.1 위치

1. 공항물류단지 1단계 내 (자스포워딩 인근)
2. 공항물류단지 2단계 내 K3블록(스타츠칩팩코리아 인근)

9.2.2 이용 대상

1.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종사자 및 공항 상주직원
2. 팀으로 이용 시 팀 구성원의 80% 이상이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종사자 또는 공항 상주직원일 경우

9.2.3 이용방법

시설명	이용 방법
축 구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시간 및 비용 : 연중, 무료개방 ■ 이용시간 : 주3회, 회당 최대 3시간 배정 - 단, 전사 체육행사 등 이용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적정성 검토 후 승인 ■ 사용신청 : 별지 제14호, 제15호 신청서 및 별지 제16호 이용수칙 확약서 제출, 승인 후 사용가능
배드민턴장 축 구 장 농 구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기간 : 연중, 무료개방 ■ 개방횟수시간 : 상시개방, 행사개최 등 필요 시 예약 접수 ■ 예약 필요 시 별지 제14호, 제15호 신청서 및 별지 제16호 이용수칙 확약서 제출, 승인 후 사용가능

9.2.4 예약접수처 : 인천공항운영서비스㈜(032-741-3574~5) 평일 09:00 ~ 18:00 예약 가능

9.2.5 체육공원의 관리

1. 인천공항운영서비스㈜ : 태양광 가로등 관리, 화장실 관리
2. 공항공사 토목조경팀 : 그 외 조경시설 관리

9.2.6 이용자 책임사항 : 별지 제17호 체육공원 이용수칙 준수

9.3 공용회의실

9.3.1 위치

1. 화물터미널 지역 : 화물터미널 C동(외항사터미널) 2층 회의실
2. 공항물류단지 지역 : 행정지원센터 1층

9.3.2 이용 대상

1. 화물터미널 C동 회의실 : 화물터미널 C동 및 운송대리점 입주자
2. 행정지원센터 회의실 :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종사자 및 공항 상주직원

9.3.3 이용방법

1. 개방시간 : 09:00 ~ 18:00, 1회당 4시간 이내
2. 사용신청 : 별지 제18호 작성 후 제출
3. 예약접수처: 인천공항운영서비스㈜(032-741-3574~5), 평일 9:00 ~ 18:00 예약 가능

9.3.4 이용자 책임사항 : 이용 시 발생하는 폐기물 뒷정리 등

9.4 공항물류단지 공용주차장

9.4.1 위치

1. 공항물류단지 C8블럭 공용주차장
2. 행정지원센터 및 사업지원센터 인근 공용주차장

9.4.2 이용 대상 : 공항물류단지 정규등록을 한 차량

9.4.3 개방시간 및 이용방법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공항운영상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 및 변경이 가능하며, 별도의 사용신청 필요 없음

9.4.4 이용자 책임사항 : 인천국제공항 주차장관리운영규칙 준수

9.5 공용시설물 이용자의 책임

공용시설물 이용자는 이용 중 발생한 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용 중 시설, 기물, 조경 시설 등의 멸실, 훼손, 오손하였을 경우 공항공사 또는 공용시설물 관리자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공항공사는 손해 정도에 따라 해당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향후 공용시설물 이용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장 자유무역지역 운영위원회

10.1 자유무역지역 운영위원회의 운영

공항공사는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정보공유, 발전방향 협의, 민원사항 논의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자유무역지역 운영위원회의 개최시기, 운영방법 등 관련 사항은 다음의 내용을 따르며,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운영위원회 지침은 폐지된다.

10.2 운영위원회 구성

10.2.1 운영위원회 구성은 공항공사, 자유무역지역 운영과 관련된 기관, 입주업체 및 업종별 협의체 등으로 하며, 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실무자 대표로 한다. 다만, 정책변경, 제도개선, 시설개선 등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의사결정이 가능한 각 기관 및 업체의 장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한다.

1. 공항공사 : 물류처
2. 관련기관 :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 인천세관 수출입통관 총괄과, 인천시 향만공항정책과
3. 입주업체 : 입주계약을 체결(또는 입주허가를 득)한 입주자 또는 인천공항 사업장 지정
4. 업종별 협의체 : 인천공항 포워딩소장협의회, 인천공항 보세운송협의회, 한국관세사회 인천공항지부 등

10.2.2 운영위원회 의장은 공항공사 미래사업본부장이 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항공사 물류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간사는 물류운영팀장으로 하며,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의소집
2. 운영위원회 심의안건 확정사항 배포
3. 회의록 작성 및 관리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10.3 운영위원회 개최

1. 정기회의 : 연 2회 개최
2. 임시회의 : 정기회의 외에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최

10.4 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자유무역지역 물류 허브화 및 물동량 창출을 위한 제도 및 시설 개선사항
2. 업체별 물동량 처리, 창고 및 사무실 등의 가동률, 화물의 종류 등에 관한 물류정보공유
3.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자 지원 및 민원처리 해결에 관한 사항
4. 기타 자유무역지역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10.5 안건의 제출

운영위원회 안건이 있는 자는 위원회 개최 전 별지 제19호를 이용하여 안건을 사전제출할 수 있다.

제11장 옥외광고물 표시승인 및 관리

11.1 옥외광고물의 표시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자시설에 옥외광고물을 신규, 변경 또는 연장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이 때,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설치하는 것으로, 간판·입간판·벽보·전단 및 이외 유사한 것을 말한다.

11.2 승인사항

11.2.1 일반사항

- 11.2~11.7에 따라 공항공사로부터 표시승인을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은 건물 외부에 부착하는 간판, 입간판 등이다. 다만, 임차인 구분용 사인물은 승인사항에서 제외한다.
- 옥외광고물의 표시와 관련하여 승인을 요청하는 주체는 광고사업자(건물주)이다.
- 공항공사로부터 표시승인을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 이외의 광고물은 공항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승인 절차 없이 표시할 수 있으나, 공항공사가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11.2.2 신규표시

- 옥외광고물을 신규로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 옥외광고물등 표시 승인(요청)서를 공항공사에 제출하여 옥외광고물 표시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옥외광고물의 표시 내용, 규격, 위치 등에 대한 사항은 입주관리 요령 제11장 및 별지 제21호 공항공사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을 따른다.
- 옥외광고물 설치 후에는 설치기준, 미관, 위치 등 승인사항을 준수하였는지 공항공사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외부에서 옥외광고물이 보이는 경우에는 인천시 중구청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1.2.3 변경표시

- 표시 중인 옥외광고물의 내용(심볼포함), 규격, 위치 등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의 승인(요청)서를 공항공사에 제출하여 옥외광고물 변경표시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외의 사항은 11.2.1 신규표시의 2~4의 규정을 따른다.

11.2.4 연장표시

공항공사 또는 인천시 중구청으로부터 옥외광고물 설치에 관하여 승인 또는 인허가를 받은 뒤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공항공사에 별지 제20호의 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기존 표시 승인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장 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3 내용에 관한 사항

11.3.1 입주사명

- 건물주의 입주사명을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입주사명이 아닌 입주사명이 일부 포함된 명칭(예시 : 00물류센터 등)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항공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입주사명 이외에 수식어 등의 내용은 표시할 수 없다.
- 건물주 이외에 제3자의 사인물이나 광고물은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건물 연면적의 50% 이상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건물주와의 협의 및 공항공사의 승인을 득하여 표시할 수 있다.

11.3.2 기업 심볼

- 입주사명 이외에 입주기업을 상징하는 기업 심볼(로고, 상징마크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기업 심볼이 평상시에 업무상 사용되는 이미지를 증빙하여야 한다.
- 기업 심볼의 경우 이미지가 아닌 수식어 등의 내용으로 표출될 수 없다. 다만, 평상시에 사용하는 로고에 수식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공항공사의 승인을 득하여 표시할 수 있다.

11.3.3 기타 광고물

임차인 구분용 사인물 이외의 기타 옥외광고물의 표시 내용은 11.3.1 및 11.3.2의 규정을 따른다.

11.4 수량 및 설치위치에 관한 사항

11.4.1 입주사명 옥외광고물

- 입주사명(심볼포함) 옥외광고물은 각 건물의 상단에 가로형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 입주사명 옥외광고물은 건물 1개동의 4측면 중 2개소까지 설치 가능하다. 다만,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하거나 건물의 앞뒷면에 도로를 접한 경우에는 공항공사의 승인을 득하여 1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 옥외광고물은 건물 상단부를 초과하여 부착할 수 없다.

11.4.2 지주식 옥외광고물

1. 지주식 옥외광고물은 도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지 식별기호를 포함하여 정문 등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부지 내 지주식 사인은 차량 유도 목적 등 제한적으로 설치하되 공항공사와 사전에 위치 및 수량에 관하여 협의 후 설치 가능하다.

11.4.3 부지 식별기호

공항물류단지 부지 식별기호는 별지 제21호 공항공사 옥외광고물 설치기준과 같이 입주 기업별로 건축물 상단(벽면부착형)과 정문(지주형)에 각 1개씩 설치하여야 한다.

11.4.4 기타 광고물

1. 임차인 구분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사인물은 캐노피 바로 아래의 위치에만 설치할 수 있다.
2. 출입구에 설치하는 사인물은 사무실 주출입구 바로 위에만 설치할 수 있다.

11.4.5 기타사항

건물 상단부, 캐노피 아래 및 사무실 주출입구 이외의 위치에는 옥외광고물 및 사인물을 표시할 수 없다.

11.5 재질 및 색상에 관한 사항

11.5.1 옥외광고물의 재질은 별도 제한이 없으나 설치 형태는 “채널(Channel)”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1.5.2 옥외광고물의 색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지 제21호의 기준을 따르며, 적색은 각 사의 심볼 규정상 적용이 불가피할 경우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11.6 크기 및 규격에 관한 사항

11.6.1 입주사명 옥외광고물 크기

1. 건물 상단에 부착하는 입주사명 옥외광고물(심볼 포함)은 건물의 외벽 판넬 모듈을 고려하여 크기가 검토되어야 하며, 아래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가. 정면/후면 : 입면 면적의 1/12 이하 (가로 1/4, 세로 1/3 이하)
 나. 측면 : 입면 면적의 1/9 이하(가로 1/3, 세로 1/3 이하)
2. 입주사명의 높이는 3.5m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심볼의 높이는 4.5m를 초과할 수 없다.
3. 기타 세부 설치기준은 별지 제21호의 공항공사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을 따른다.

11.6.2 지주식 옥외광고물 크기

지주식 옥외광고물은 별지 제21호의 공항공사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을 따른다.

11.6.3 기타 옥외광고물 크기

1. 임차인 구분용 사인물은 세로 80cm, 가로는 트럭덕 입면 너비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출입구에 설치하는 사인물은 세로 80cm, 가로는 출입구 바로 위 기반부 입면 너비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11.7 전기 및 조명에 관한 사항

11.7.1 획지 식별표지는 야간이나 우천시에도 식별할 수 있도록 내부 조명을 설치하고, 자체 건물표지의 조명은 자율적으로 하되 조명을 설치할 경우 조명방식은 내조형(표지 내부에 설치)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1.7.2 벽면 부착 표지와 지주광고물의 전원공급용 차단기로는 누전에 의한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1.7.3 지주광고물에 인입되는 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하며 보행자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선관에 넣어 매설 시공한다.

11.7.4 보행자의 접촉 시 감전사고와 노출전선에 의한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며 이외의 모든 전기관련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11.8 현수막 부착에 관한 사항

공항공사 소유의 부지 내에는 현수막의 부착이 원칙적으로 금지이나, 안전 또는 긴급 공지에 준하는 내용인 경우 공항공사에 통보 후 부착하여야 한다.

11.9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11.9.1 자유무역지역 내 옥외광고물을 설치한 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에 따라 옥외광고물을 신규로 설치, 표시변경, 표시기간 연장 등을 하는 경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1.9.2 승인된 옥외광고물의 표시기간 중 공항공사로부터 옥외광고물에 대한 불안전사항을 지적받거나 조치사항을 통보받는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하여 조치하고 공항공사에 안전점검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11.9.3 풍수해 등에 대비하여 광고사업자는 상시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옥외광고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장 개인정보의 관리

12.1 개인정보의 수집

12.1.1 공항공사는 자유무역지역법 제11조에 따른 입주계약 및 12조에 따른 입주자격여부 검토 및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하여,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제40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기기준지 등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를 수집한다.

12.1.2 공항공사는 자유무역지역의 운영과 관련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며, 수집 전 개인정보 제공자에게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개인정보 제공자의 동의하에 수집하여야 한다.

12.2 개인정보의 취급

공항공사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관 시 별도보관, 비밀번호 설정, 접근 가능인원 최소화 등 공항공사의 개인정보관리지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2.3 개인정보의 이용

공항공사는 수집목적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등 관련법 및 공항공사의 개인정보관리지침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12.4 개인정보의 파기

공항공사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저장·관리한다.

12.5 기타

기타 자유무역지역 운영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 취급, 관리는 공항공사 개인정보관리지침, 자유무역지역 입주(변경)계약 신청정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따른다.

제13장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13.1 공항공사의 역할

공항공사는 자유무역지역의 공용시설 및 공항공사 소유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의 책임이 있으며, 공항공사 관련부서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구분	관련부서	연락처	주요업무
자유무역지역 개발, 투자유치 및 운영	물류개발팀	032-741-22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유무역지역 제도개선 신규화물터미널 개발 Aircis 운영 등
	물류영업팀	032-741-22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류단지 투자유치 신규물동량 창출, 신규노선 취항 등
	물류운영팀	032-741-22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기업 지원·관리 임대료 산정 입주계약 체결 등
계약업무	물류개발팀	032-741-22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항물류단지 실시협약 체결(토지임대) 화물터미널 지역 창고시설 임대계약 업무용시설 임대계약 상업시설 임대계약
	물류영업팀	032-741-2277	
	물류운영팀	032-741-2288	
	수입총괄팀	032-741-2372	
	식음서비스팀	032-741-2244	
자유무역지역 운영용역	인천공항 운영서비스(주)	032-743-0864 032-743-08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유지관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물터미널C, 화물터미널D, 북측항공화물창고, 행정/사업지원센터 관리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 기계, 전기(소방), 통신, 경비, 공항물류단지 출입관리, 질서유지/계도, 환경미화
시설 유지·관리 등	토목시설팀	032-741-26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목 관련 시설유지관리
	조경팀	032-741-26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경 관련 시설유지관리
	부대시설팀	032-741-23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및 구축물 시설유지관리
	플랜트시설팀	032-741-24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계관련 시설유지관리
	환경관리팀	032-741-26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 처리절차 등 안내
	통신시설운영팀	032-741-29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신청
	시설환경팀	032-741-21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및 구축물 환경미화관리
	전력계통팀	032-741-28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관련 시설유지관리
	교통서비스팀	032-741-24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물터미널지역 차량정규등록 CCTV 등 출입기록관리
교통시설팀	032-741-28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유무역지역 교통시설 유지관리 	

13.2 입주자 책임사항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가 입주자시설을 소유하여 운영하는 경우 시설 유지관리, 보수, 경비, 폐기물처리 등 입주자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책임을 진다. 또한, 자유무역지역 내 공용시설 등에 대해 입주자의 고의나 과실로 훼손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4장 안전사항

14.1 일반사항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업시행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선명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가지며,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안전에 유의하여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4.2 안전관리

14.2.1 사업시행자는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제3자(임(전)차인 등)의 시설사용에 대하여도 전반적으로 안전을 관리한다.

14.2.2 사업시행자는 풍수해(태풍, 호우), 설해(대설)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4.3 안전점검

사업시행자는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운영되는 시설에 대하여 실시되는 각종 안전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14.4 안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14.4.1 공항공사는 자유무역지역 내 풍수해 대비, 시설물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안전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4.4.2 공항공사는 자유무역지역 내 안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비상연락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자유무역지역 입주(변경)계약 신청(확인)서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8.2>

자유무역지역 [] 입주 계약 신청(확인)서 자유무역지역 [] 입주변경계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회 사 명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 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0000. 00. 00.	
	주 소	(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기입)		
	업무담당자	이메일주소	@	
사업내용	사 업 명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세세분류)	주생산품		
	투자규모(자본금)	원(US \$ 상당)	외국인 투자비율 및 투자금액	
계약 사항				
계약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경사항	변경 후	
* 변경사항은 면적의 증감 또는 사업명/업종의 변경사항을 기재함.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주(변경)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인
관리권자 귀하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투자기업만 첨부합니다) 3. 해당 사업에 관한 인가·허가·면허·등록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5. 관련 법령에 따라 입주자격 및 결격사유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없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계약 또는 입주변경계약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관리권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 · 결재	→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관리권자)		처리기관 (관리권자)		처리기관 (관리권자)		



[별지 제2호]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입주(변경)계약 세부내역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입주(변경)계약 세부내역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업 체 명)(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한다) 제11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입주내용)

입주위치	* 사업장이 복수일 경우 모두 기입							
입주면적 * 총면적 (전용면적+공용면적) 기준작성	창 고				사무실			
	건물명	전체	임/전대	실사용	건물명	전체	임/전대	실사용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기타 용도의 면적 및 특이사항 :							
입주인원	00명							
증빙	<input type="checkbox"/> 임(전)대차계약 사전신고(확인)서 <input type="checkbox"/> 임대차계약 <input type="checkbox"/> 전대차계약							
	<input type="checkbox"/> 실시협약 <input type="checkbox"/> 기 타()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2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제3조(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 ① 계약상대자는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입주관리요령 등 자유무역지역의 운영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기타 자유무역지역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 시 상주인원 및 차량에 대한 정보를 공사에 제공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의 변경) 자유무역지역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계약상대자가 업종, 면적 및 위치 등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공사에 입주변경계약 신청 또는 입주계약 변경사항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이행관리) 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입주자시설, 업종 등 입주계약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해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자유무역지역법 제15조에 의한 입주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 2. 실시협약, 임대차계약, 전대계약 등이 해지 된 경우
 - 3. 기타 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사유가 발생할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법 제15조에 따라 처분한다.

제7조(계약의 만료) 입주자는 공항공사와 체결한 입주계약의 기간이 만료되면 입주계약신청(확인)서 원본과 입주계약만료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입주자가 계약기간 중 퇴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거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7일 전까지 퇴거사유를 증빙하는 서류와 함께 입주계약만료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주(변경)계약을 세부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인

관리권자 귀하

[별지 제3호] 사업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신청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000 - 00 - 00000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직접담당임원					-				
		* 법인에 한함,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법인 등가입원								
사업내용	업종명		한국표준산업세분류번호		사업내용					
			00000		*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영위하는 사업내용을 자세히 기입					
			00000							
			00000							
사업에 필요한 면허, 등록증 등 증빙서류		* 등록증, 허가증의 경우 등록번호 또는 허가번호까지 기입								
특기사항	사업개시 예정일		* 신규/변경 임대차계약 공간에서의 사업개시 예정일 또는 업종 추가 후 사업개시 예정일 기입							
	기타사항		* 계약 변경일 경우 변경사유 상세기입							
사업장	1	건 물 명			계약기간		0000.00.00~0000.00.00			
		주 소								
	1	건 물 주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000 - 00 - 00000			
		임 대 인					000 - 00 - 00000			
	1	사용현황	구 분		참 고		사무실			
			1	전 체		m ²		호		
				임대/전대		m ²				
				실사용		m ²				
			2	전 체		m ²		호		
				임대/전대		m ²				
실사용		m ²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별지 제3호] [붙임] 임(전)대내역서

임(전)대내역서									
1	건 물 명				호 실 명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계약기간		용 도		
			000-00-00000		0000.00.00 0000.00.00		사무실 또는 창고		
							면 적		
							m ²		
면적 소계					사무실		창고		
* 임(전)대내역서 상 임(전)대 면적의 합계는 사업계획서 상 임(전)대면적과 동일해야 함					m ²		m ²		
2	건 물 명				호 실 명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계약기간		용 도		
							면 적		
							m ²		
							m ²		
면적 소계					사무실		창고		
m ²					m ²		m ²		
3	건 물 명				호 실 명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계약기간		용 도		
							면 적		
							m ²		
							m ²		
면적 소계					사무실		창고		
m ²					m ²		m ²		
면적 총계	건 물 명				사무실		창고		
						m ²			
						m ²			
위와 같이 임(전)대내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별지 제4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동의서

자유무역지역 입주변경계약체결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p>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입주(변경)계약 체결을 위해 제출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항공사가 수집 및 이용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p>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필수)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휴대폰 사무실), 이메일 주소, 주소, 주민등록번호(내국인일 경우), 등록기준지, 외국인등록번호 혹은 여권번호(외국인일 경우)	입주계약 체결, 변경, 해지관련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및 기타 민원처리	수집일로부터 입주계약 만료(해지) 후 2년 까지	
<small>*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등록기준지는 입주 적격여부 및 결격사유 조회완료 후 해당내용 삭제</small>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보제공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입주계약의 체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p>			
2.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필수)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내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혹은 여권번호(외국인일 경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에 따른 입주 적격여부 검토	수집일로부터 입주계약 만료(해지) 후 2년 까지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보제공자는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입주계약의 체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p>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제3자 보유기간
인천세관 조사총괄과 자유무역지역 관리권자 등록기준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세법 위반여부 확인 자유무역지역법 위반여부 확인 추천등기여부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조회내용 확인 후 즉시파기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보제공자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입주계약 체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p>			
<p>4. 수집 방법 : 서면양식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p>			
<p>5. 개인정보의 폐기 및 보관 보유기간이 종료된 이후 전자적 파일로 기록된 정보는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으로 자동 파기되며, 접수된 서류는 재생할 수 없는 물리적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합니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보관됩니다.</p>			
<p>6.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 방법은 공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p>			
20 년 월 일 성 명 : _____ 인			

[별지 제5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p>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p>		
이용 사무(이용목적)	공동이용 행정정보	동의여부 (동의서 서명 또는 인)
자유무역지역 입주(변경)계약 신청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관세 납세증명서	
<p>2. 이용기관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공사</p>		
<p>3.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p>		
<p><input type="checkbox"/> 본인의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조회하고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 체결 업무에 이용하는 것을 동의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p>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_____ 인		
생년월일 : _____		
전화번호 : _____		

[별지 제6호]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 변경사항 신고(확인)서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 변경사항 신고(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신청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000 - 00 - 00000
	주소	* 법인의 경우 주사무소의 소재지 주소 기입		생년월일 0000. 00. 00.
	사업장 소재지	* 자유무역지역 내 사업을 영위하는 창고 또는 사무실 주소(건물명, 동, 호실까지 기입)		전화번호 - -
		담당자명		
변경내용	변경사항	<input type="checkbox"/> 대표이사 <input type="checkbox"/> 직접담당임원 <input type="checkbox"/> 계약기간 <input type="checkbox"/> 법인관련정보 () <input type="checkbox"/> 기타 ()		
	변경 세부사항	기존 : 변경 :		
	기타 특이사항			
변경신고 유의사항 : 변경신고 사유 발생 후 5근무일 이내에 관리권자에게 신고해야 함				
위와 같이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에 대한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인				
관리권자 귀하				
증빙서류		변경 사유	제출 서류	
	1.	계약기간	임(전)대차계약 관련 서류, 개인정보수집동의서	
	2.	대표이사 및 직접담당임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외국인의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공증된 자국신원증명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3.	법인관련 정보변경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변경내용 : 법인명, 법인본점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4.	기 타	필요증빙서류 제출		
수수수료 없음				
위와 같이 입주계약 변경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관리권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신청인		→	→	→
		처리기관 (관리권자)	→	처리기관 (관리권자)
		→	→	→
		처리기관 (관리권자)	→	발급
		처리기관 (관리권자)		처리기관 (관리권자)

[별지 제7호]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만료 신고(확인)서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만료 신고(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신청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000 - 00 - 00000	
	주소	* 법인의 경우 주사무소의 소재지 주소 기입		생년월일 0000. 00. 00.	
	사업장 소재지	* 자유무역지역 내 사업을 영위하는 창고 또는 사무실 주소(건물명, 동, 호실까지 기입)		전화번호 - -	
		담당자명			담당자 이메일 @
내 용	<input type="checkbox"/> 입주계약기간 만료 <input type="checkbox"/> 종료퇴거 (퇴거예정일 : 0000.00.00)				
계약 만료사유					
위와 같이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만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인					
관리권자 귀하					
제출서류	1. 자유무역지역 입주(변경)계약서 2. 폐업으로 인한 만료 - 폐업신고서 3. 기타 입주계약 기간만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수료 없음	
	위와 같이 입주계약 만료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관리권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신청인		→	→	→	
		처리기관 (관리권자)	→	처리기관 (관리권자)	
		→	→	→	
		처리기관 (관리권자)	→	발급	
		처리기관 (관리권자)		처리기관 (관리권자)	

[별지 제8호] 임(전)대차계약 사전신고(확인)서

임(전)대차계약 사전신고(확인)서										
임 (전) 대 인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					
			생년월일		0000. 00. 00.					
	주 소		* 법인의 경우 주사무소의 소재지 주소 기입							
사업장 소재지		* 자유무역지역 내 사업을 영위하는 창고 또는 사무실 주소(건물명, 동, 호실까지 기입)								
임 (전) 차 인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					
			생년월일		0000. 00. 00.					
	주 소		* 법인의 경우 주사무소의 소재지 주소 기입							
사업장 소재지		* 자유무역지역 내 사업을 영위하는 창고 또는 사무실 주소(건물명, 동, 호실까지 기입)								
임 대 내 용	건물주		건물명							
	임대위치									
	면적(㎡)	창고	㎡	사무실	㎡	기타	㎡			
	임대 가격	원/㎡		임대 기간	0000.00.00 ~ 0000.00.00					
	임대 사유									
위와 같은 임(전)대차계약 건에 대하여 관리권자에게 사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인)										
관리권자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임(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임(전)대인의 임(전)대차계약 현황 1부						수수료 없음		
위와 같이 임(전)대차계약 건에 대하여 사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관리권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인)										

[별지 제9호] 임(전)대차계약 체결신고(확인)서

임(전)대차계약 체결신고(확인)서										
임 (전) 대 인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0000. 00. 00.					
			주 소		* 법인의 경우 주사무소의 소재지 주소 기입					
	사업장 소재지		* 자유무역지역 내 사업을 영위하는 창고 또는 사무실 주소(건물명, 동, 호실까지 기입)							
임 (전) 차 인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0000. 00. 00.					
			주 소		* 법인의 경우 주사무소의 소재지 주소 기입					
	사업장 소재지		* 자유무역지역 내 사업을 영위하는 창고 또는 사무실 주소(건물명, 동, 호실까지 기입)							
임 대 내 용	건물주		건물명							
	임대위치									
	면적(㎡)	창고	㎡	사무실	㎡	기타	㎡			
	임대 가격	원/㎡		임대 기간	0000.00.00 ~ 0000.00.00					
	임대 사유									
위와 같이 임(전)대차계약 체결에 대하여 관리권자에게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인)										
관리권자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임(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임(전)대인의 임(전)대차계약 현황 1부						수수료 없음		
위와 같이 임(전)대차계약 체결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관리권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인)										

[별지 제10호] 공항물류단지 차량출입등록 신청서

공항물류단지 자동차 출입등록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등록구분	정기등록 [] 입주기업체 [] 협력사 [] 상주기관		
	단기등록 [] 화물운송 [] 건설공사, 유지보수 [] 생계형 출입(정기등록 관계자)		
신청회사	출입등록 관리책임자	전화번호	
	주차장	주차면수	
운전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자동차번호		
	차종	[] 소형승용 [] 중형승용 [] 대형승용 [] 소형화물 [] 중형화물 [] 대형화물 [] 기타차종() [] 대중교통(택시, 버스)	
	출입목적	[] 출퇴근 [] 화물운송 [] 기타업무(상세히 기재 바랍니다.)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입주관리 요령」 제4장에 따라 위와 같이 공항물류단지 자동차 출입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인천국제공항공사 귀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인천공항 공항물류단지 자동차 출입등록을 위해 제출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항공사가 수집 및 이용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필수)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차량번호	공항물류단지 자동차 출입등록	등록기간 만료 후 즉시파기	
☞ 정보제공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공항물류단지 자동차 출입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제3자 보유기간
인천세관	자유무역지역 출입기록 확인	성명, 전화번호, 차량번호	조회내용 확인 후 즉시파기
제공요청 공공기관	관련 법령에 따른 출입기록 확인		
☞ 정보제공자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공항물류단지 자동차 출입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구비서류	1. 신청문서, 2. 출입등록 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 3. 자동차 출입등록 신청현황
신청인 확인사항	1. 등록정보의 변경 발생 즉시 처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정보변경 미 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처리기관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처리기관의 「인천국제공항 주차장관리운영규칙」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관리 요령」을 준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처리기관은 등록정보가 허위이거나 등록정보의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정기등록은 등록일로부터 3년간 출입이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대 등록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6개월간 출입하지 않으면 정기등록을 삭제하며, 필요 시 재등록합니다. 2. 단기등록은 등록일로부터 6개월간 출입이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대 등록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신청인은 「자유무역지역 공항물류단지 사업시행에 관한 실시협약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출입등록 관리책임자를 적어야 합니다. 4. 주차면수는 일반건축물대장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신청대수는 주차면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출입목적이 허위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
신청인	처리기관 (관리권자) → 처리기관 (관리권자) → 처리기관 (관리권자)

[별지 제11호] 공항물류단지 차량출입등록 신청서(단체용)

공항물류단지 자동차 출입등록 신청현황

출입등록 관리책임자 소속		성명		연락처		
연번	성명	연락처	자동차번호	차종	출입목적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차종은 승용(대형/중형/소형), 화물(대형/중형/소형), 기타차종, 대중교통(버스/택시) 중 기재
- 출입목적은 출퇴근, 화물운송, 기타업무(상세히 기재 바랍니다.) 중 기재


[별지 제12호] 공항물류단지 자동차 출입등록 말소 신청서

공항물류단지 자동차 출입등록 말소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말소구분	[] 정기등록 [] 단기등록		
신청회사	출입등록관리책임자	전화번호	
운전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자동차번호		
	차종	<input type="checkbox"/> 소형승용 <input type="checkbox"/> 중형승용 <input type="checkbox"/> 대형승용 <input type="checkbox"/> 소형화물 <input type="checkbox"/> 중형화물 <input type="checkbox"/> 대형화물 <input type="checkbox"/> 기타차종() <input type="checkbox"/> 대중교통(택시, 버스)	
말소사유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입주관리 요령」 제4장에 따라 위와 같이 공항물류단지 자동차 출입 등록 말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인천국제공항공사 귀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인천공항 공항물류단지 자동차 출입등록을 위해 제출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항공사가 수집 및 이용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필수)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차량번호	공항물류단지 자동차 출입등록	등록기간 만료 후 즉시파기	
☞ 정보제공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공항물류단지 자동차 출입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제3자 보유기간
인천세관	자유무역지역 출입기록 확인	성명, 전화번호, 차량번호	조회내용 확인 후 즉시파기
제공요청 공공기관	관련 법령에 따른 출입기록 확인	차량번호	
☞ 정보제공자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공항물류단지 자동차 출입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신청인		처리기관 (관리권자)	→
		검토	→
		처리기관 (관리권자)	→
		결재	→
		처리기관 (관리권자)	→
		등록	

[제13호] 폐기를 처리 안내문

폐기물 처리안내문

- 귀하께서는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입주관리요령' 제5장을 위반하여 폐기물 처리안내문을 발부합니다.
 - 폐기물 무단투기
 - 공용지역 내 물품 무단방치
 - 기 타 ()
- 폐기물은 배출자가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폐기물 무단 투기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용지역 내 무단으로 방치된 물품은 즉시 운반 등 조치를 요청 드리며, 안내문 부착 후에도 방치 물품에 대한 적절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항공사는 이를 **폐기물로 간주하여 임의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별지 제14호] 공항물류단지 노상주차공간 지정요청서

노상주차공간 지정요청서			
신청인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담당자 / email	
사용내용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위치		
	관리책임자		
이용조건	1. 노상주차공간 사용은 승인지역에 한하며, 승인용도 외 사용금지 및 이용승인 기간을 준수합니다. 2. 자유무역지역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하여 공항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청인은 즉시 자진 철거해야 합니다. 4. 관리책임자는 노상주차공간 내 질서유지, 폐기물처리 등의 책임을 집니다. 5. 노상주차공간 사용자 및 관리책임자가 이용조건 위반 및 관리소홀, 또는 교통 혼잡 및 사고유발 등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공항공사는 노상 주차공간에 대한 지정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공항공사는 당해시설의 환경관리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행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합니다.		
위의 사용규칙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노상주차공간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업체명) :		(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15호] 체육공원 시설 이용신청서

체육공원 시설 이용신청서			
구 분		내 용	
신청 단체	소 속		
	담당자		
	연락처	<i>* 예약 안내 등을 위하여 담당자 휴대전화 번호 기재 필수</i>	
이용시설	<input type="checkbox"/> 축구장 <input type="checkbox"/> 농구장	<input type="checkbox"/> 배드민턴장(네트 포함) <input type="checkbox"/> 족구장(네트 포함)	
이용일시	주 말	20 년 월 일	00:00 ~ 00:00
	평 일	20 년 월 일	00:00 ~ 00:00
	<i>* 이용 가능시간 : 9:00~12:00, 12:00~15:00, 15:00~18:00 중 1회 이용</i>		
사용인원	신청팀	(명)	
행사내용			
이용조건	1. 신청팀은 명단확인을 위해 신분증 지참합니다. 2. 시설 사용 전 명단 확인 후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3. 신청인은 체육공원 시설 이용 및 안내와 관련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4. 단체 이용 시 이용자 10인 이상은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및 공항 상주직원 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5. 문의처(FTZ 출입통제소) : TEL. 032-741-3574~5 FAX : 032-741-3580		
위와 같이 체육공원(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업체명) : (인) <div style="text-align: right;">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div>			

[별지 제16호] 체육공원 이용자 명단

소속(단체명) :

연 번	단체명(소속명)	성 명	비 고(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별지 제17호] 체육공원 이용수칙 협약서

체육공원 이용수칙 협약서	
<p>본인(단체)은 인천국제공항 체육공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함은 물론 관련 직원의 통제 및 협조에 응할 것을 서약합니다.</p>	
<p>1. (이용중단) 우천 시 이용을 금지하며, 이용 중 비가 올 경우 경기를 중단하고, 관리자의 통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2. (이용시간) 이용신청서에 따른 이용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3. (시설보호) 각 경기장(축구장 등)의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펜스 그물망을 올라가거나 펜스를 향하여 공을 차는 행위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4. (취사/소음 등) 취사, 과도한 음주, 도박,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5. (안전사고) 시설물 이용 중 야기된 안전사고 및 시설물의 파손은 당사자 및 이용단체에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p>	
<p>6. (행사종료) 행사 종료 후 이용시설을 정리하신 후, 쓰레기는 반드시 회수해 가시기 바랍니다.</p>	
<p>7. (책임) 이상 각 호의 위배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이용자(단체)의 책임으로 하며, 향후 이용 기회가 상실됩니다.</p>	
<p>상기 이용자 수칙을 확인합니다.</p> <p>20 년 월 일</p> <p>신청인(업체명) : (인)</p> <p style="text-align: right;">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p>	



[별지 제18호] 공용회의실 사용신청서

공용 회의실 사용신청서			
신 청 업 체			
신 청 자			
연 락 처	(TEL)	(H·P)	
사 용 일 자		사용인원	
사 용 시 간 (4시간 한도)			
참 석 대 상			
사 용 목 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3. 		
마이크 사용여부	O , X	빔 사용여부	O , X
이 용 조 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 후 청결상태를 유지합니다. 2. 회의실 사용일자 및 사용기간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3. 정숙한 회의 운영으로 공공질서를 유지에 노력합니다. 4. 사무용품 및 음료수는 사용자가 공급합니다. 		
<p>위의 사용규칙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회의실 사용을 신청합니다.</p> <p>20 년 월 일</p> <p>신청인(업체명) : (인)</p> <p style="text-align: right;">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p>			



[별지 제19호] 자유무역지역 운영위원회 안건제출 서식

자유무역지역 운영위원회 상정 안건			
자유무역지역 운영위원회 상정안건으로 제출합니다.			
구 분	<input type="checkbox"/> 정기회의	<input type="checkbox"/> 임시회의	제안일자
제안위원	소 속 :		성 명 :
안 건 명			
관련기관(업체)			
현황(목적)			
문 제 점			
협의요지(요청사항)			
첨부자료			



[별지 제20호] 옥외광고물등 표시 승인(요청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7. 6.>

옥외광고물등 표시 ([]최소 []변경 []연장) 승인(요청서)		
광고주 (타사광고는 옥외광고 대행사업자)	성 명	법인등록번호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사용자재
광고물등의 규격	광고내용	
표시 위치 또는 장소		
표시기간		
광고물등 관리자	성 명	법인등록번호 위와 같음
	업소명	주 소 위와 같음
	* 시공업체 :	* 시공업체 :
안전점검 신청여부	안전점검 신청 [] / 미신청 []	

허가조건

-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Signage 설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저촉 될 경우 본 승인은 취소되며, 관련 법규에 의해 철거될 수 있습니다.
- 승인된 광고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위해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 광고물의 규격, 광고내용, 위치,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합니다.
- 광고주 및 광고물의 관리자의 주소나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해당 내용에 대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문서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인된 광고물의 표시기간 중 안전점검 등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광고물의 불안전 사항에 대한 지적 및 조치사항을 통보받는 경우 즉시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문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3조의2 또는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2항 및 제5항, 제10조제1항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표시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인

[별지 제21호]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

옥외 광고물 설치 기준	
위치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세 위치에 대한 배치는 공사와 협의하여 배치한다. 2. 지주식 옥외광고물은 각 입주사 출입구 쪽에 제작 설치한다.
크기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면상의 가로 전체길이 X, 세로높이를 Y라고 가정한다. 2. 옥외광고물 가로길이 : $W=1/4X$, 세로높이 $H=1/3Y$ 3. 입주사명 옥외광고물은 그 크기가 W와 H값을 넘지 아니한다. 4. 글자 높이는 최대 3.4m 이내로 제한, 심볼마크의 크기는 4.5m 이내로 제한한다. <p>[정면도(후면도)]</p>
설치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물 상단에 설치를 계획하여야 하며 최대크기는 다음과 같다. 2. 옥외광고물의 상단 0.1H, 하단 0.1H의 공간을 두어야 한다. 3. 옥외광고물의 가장 끝부분은 0.25W의 공간을 두어야 한다. <p>[설치위치 확대도]</p>

색깔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벽면 채널 옥외광고물 색상은 Pantone 1235C를 적용한다. 2. 지주식 옥외광고물 색깔은 다음과 같다. 3. 부지 식별 옥외광고물 : 바탕색-1235C, 문자-Black 4. 입주사명 옥외광고물 : 바탕면-279C, 문자-White3. 세부기준 <p>[지주식 및 부지식별 옥외광고물]</p>
적용예시	<p>[정면도(후면도)]</p> <p>[측면도]</p>